

# 한국 판결문 영어 번역 품질보증 방안 고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례의 시사점\*

유정주(한동대학교)

##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도 법률번역(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판결문<sup>1)</sup>의 영어 번역 품질을 기관의 품질보증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전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문은 영미법계 국가들의 주요 법원(sources of law)으로, 규범력을 갖는 법 언어(language of the law)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르 가운데 하나다.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경우 판례가 독립된 법원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적 성격의 판결문 번역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판결문 영어 번역은 번역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1284).

이 논문은 2026년 4월 18일 한국번역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확정된 판결 내용을 법원이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판결서라 하며, 일상적으로는 판결문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법령상 용어는 판결서이다(법제처, 2026). 본고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상 차이가 없는 용어인 판결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판례’의 경우도 소액사건심판법, 군사법원법 등의 사용례와 같이 개별 판결, 결정 내에 적시된 법원의 판단이 아닌, 개개의 재판 그 자체를 가리키는 느슨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주체에 따라 로펌 등 사적 단체가 수행하는 참고 목적의 비공식 번역과, 제도 법률번역의 일환으로 법원이 책임기관이 되어 직접, 혹은 외주를 통해 수행한 뒤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공식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식번역에 해당하는 제도번역 사례로는 대법원 및 일부 고등·지방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특허법원의 심결례에 대한 영문 번역을 들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법원도서관이 번역 책임기관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대법원의 주요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영문·중문 번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해외판례 컬렉션’란을 통해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중요 판례 요지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번역 책임기관으로 현재 결정문에 대한 영문 번역을 단행본 형태의 영문 판례집과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하며, 특허법원 역시 2020년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와 판결문 공유에 관한 협약을 맺고, 주요 지재권 판결의 영어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즉, 한국법제연구원이 책임기관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 법령’과 아울러, 한국 법원의 주요 판례에 대한 영문 번역은 매년 정기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 법률번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륙법·보통법과 같이 상이한 법계 간 판결문의 번역은 법률장르 가운데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번역으로 손꼽히며, 기관의 번역 품질관리 역시 섬세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법령과 달리 판결문은 법관이나 소송대리인 등 법률전문가를 1차 독자로 하여 밀도 높은 전문 내용과 법률 용어를 특징으로 하는 데다, 선행의 표현에 대한 존중을 이유로 장문 및 고어 사용 관행 또한 여전하다. 또한 법 해석을 통한 수신자 설득 목적상 국내 법령, 국제법, 기존 판례 등과의 상호텍스트성이 매우 높아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 적용 범주가 광범위하다. 게다가 심급이나 소송 분야별 당사자 호칭, 재판관의 호칭, 각 법원의 명칭 등은 법계 간, 사법 관할 간 용어의 등가 달성이 매우 어려운 요소로 손꼽히므로, 용어 사용의 정확성 달성도 쉽지 않다(Tomić & Montoliu, 2013, pp. 221-242).

번역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장르 구조와 문체 또한 난제에 해당한다. 대륙법계 판결문은 해당 국가 및 심급 법원별로 거시구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

음은 물론, 어휘 선택과 문장구조 또한 해당국 법원이 발전 및 확립시켜 온 선례에 종속된다. 또한 판결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법률로 요건화되어 있고<sup>2)</sup>, 법원의 공식 의견인 법정 의견(opinion of the court) 또한 ‘단일의견(per curiam opinion)’ 방식에 따라 법원 전체의 명의로 작성되어 탈개인화되고 동일한 사법 문체(judicial prose)를 선호한다. 물개성적 문서 작성 스타일,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높은 정형성, 선례와 관련 법령에서 잘라낸 광범위한 인용군집(cluster citations)은 대륙법계 판결문의 전형적 특징으로 지목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하급심 판결은 통상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가 작성하기도 하여 거시구조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되는 상급법원의 판결의 경우 ‘개별의견(seriatim opinion)’ 방식을 채택하여 소수의견을 적시함으로써 개별 법관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례로 미연방대법원 판결문(opinion)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고, 개인적이고 논증적인 표현 스타일, 각주의 폭넓은 활용 등으로 인해 법학 논문과 유사한 장르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오세혁, 2009).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신뢰할 만한 법계 간 판결문 번역을 위해서는 해당 법 제도와 법원별로 수립되어 온 사법언어 사용 관행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심급별, 소송 분야별 원천언어(SL)-목표언어(TL) 판결문의 거시구조와 논증 방식, 스타일 규범, 문체적 특징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비교법적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당 지식을 갖춘 법률가가 비교법 작업에 의해 번역을 수행하였다더라도 정형어구 번역의 표준화, 법령과 기존 판례 인용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인, 중요 법률용어의 정확성 검증, 문체적 특징 조율 등 다양한 기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판결문 간 품질 격차와 변이의 발생을 통제하기 어렵다. 기관들이 AI 번역 전면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품질 표준에서 이탈된 번역 결과물이 다른 번역들과 혼합되어 기계번역 틀을 통해 자동 추출되는 경우 심각한 품질 위험이 야기될

2)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판결문 작성의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1991년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재판예규 제316호)과 1998년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재판예규 제625-1호)이 제정·시행 중에 있다.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번역이 인하우스 부서가 아닌 외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명시적인 기관의 번역기준과 스타일가이드, 모범 관행을 규정 한 텍스트 모델과 템플릿, 신뢰할 만한 용어자원, 체계적인 품질평가와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 품질보증 절차는 번역문 간 변이의 관리나 용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식이다(Drugan et al., 2018).

즉, 제도번역으로 이루어지는 판결문 번역 품질의 핵심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품질보증 절차 수립을 통한 표준화의 달성과 수준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판결문 번역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번역의 수진자, 소통기능, 품질지표 등 기본적 사항에서부터, 번역기준과 스타일가이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번역 고려 요소, 외주번역 및 용어자원 관리 등을 포함한 인력·과정·결과물 품질보증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법원도서관이 연구와 판례 검색, 문서작성 및 판례번역에 법률정보 전문 생성형 AI 서비스인 Lexis+with Protégé를 본격 도입하면서(법률신문, 2025), AI를 활용한 판례 번역과 관련한 품질보증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법률번역 연구는 아직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법령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판결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우선 그간 서구의 법률번역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판결문 번역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와 품질지표, 고려 사항들을 정리한다. 또한, 법원도서관과 같은 한국의 판결문 번역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번역 품질보증 사례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sup>3)</sup>의 내부 번역 및 감수 절차, 외주번역 관리, 용어자원 및 AI 번역도구 활용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5년 1월 이후 법원도서관이 AI 번역임을 명시한 하급심 판결서 및 기존 대법원 판례

3) CJEU는 24개 공식언어와 552개 언어쌍을 다루며, 2024년 기준 완료된 번역량은 1,370,501페이지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번역 대기 물량은 293,112페이지에 달한다. 주요 번역대상 문서는 판결문(judicial decisions), 서면심리서(written pleadings), 법무관 의견서(Advocate General's Opinions), 변론보고서(report for the hearing) 등이다(CJEU, 2025a; 2025b).

번역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AI 번역 확대에 따른 기관의 품질보증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 2. 판결문 번역의 품질 고려사항

### 2.1 번역 판결문의 법적 지위와 소통목적

법률텍스트의 수신자는 법규범의 해석 및 적용 권한을 갖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접수신자(direct addressees)와, 해당 규범에 영향을 받는 집단인 간접수신자(indirect addressees)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판결문의 직접수신자는 (법체계에 따라) 집행관, 보안관, 경찰관을 포함한 법집행 공무원들(law enforcement officers) 및 다른 판사들이며, 간접수신자는 해당 판결의 당사자들이다(Šarčević, 1997, p. 60). 반면, 법률텍스트의 수신자를 저자가 텍스트 생산 시 염두에 둔 독자인 1차 독자(primary audience)와 저자가 원래 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2차 독자(secondary audience)로 구분할 경우(Sager, 1997), 판결문의 1차 독자는 당사자들과 그 소송대리인, 2차 독자는 동료 법관, 상·하급심 판사, 입법가 및 공무원, 학자, 언론, 일반 대중 등이 될 수 있다(Kozbiat, 2020, pp. 94-96). 그러나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법률대리인 및 상·하급심 판사, 향후 유사한 사안을 판단하게 될 법관 등 법률전문가들 간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판결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작성보다는, 실제 수신자인 법률전문가들의 법적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sup>4)</sup>

4) 법률언어에서 ‘Plain Language’ 사용 흐름이 보편화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 확대되면서, 판결문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1차 독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판결서 작성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공공언어 순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직접수신자인 법률전문가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의

반면, 번역 판결문(target text, TT)의 의도된 수신자는 TT의 법적 지위에 따라 원문 판결문(source text, ST)의 수신자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법률번역의 소통적 기능은 ST가 아닌 TT의 지위, 즉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ST와 TT의 지위가 다를 경우 의도된 수신자 또한 같지 않다(Šarčević, 2012, pp. 187-199). ST가 법령이나 판례 등 1차 법원(primary sources of law)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TT가 ST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이는 법원의 해석 대상이 되는 정본(authentic text) 또는 정본 번역(authoritative translation)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번역 판결문이 ST와 동일한 정본인 경우, 이는 ‘권리·의무의 고지를 통해 수신자의 장래 행위를 규율하고 법률관계를 신설·유지·변경’하려는 소통 목적으로 ‘규범적’ 목적을 갖는다(Koźbiał, 2020, pp. 96-97). 반면, 번역 판결문이 ST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경우, 이는 법률공동체와 일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적’ 목적을 갖는다.

일례로, CJEU 판결문의 경우, 재판소 공식 업무언어인 불어로 먼저 작성되고 신청인이 선택한 ‘사건언어(language of the case)’로 번역되어 실질적으로 불어본이 ST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절차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사건언어본만이 정본의 지위를 가지며, 언어본 간 불일치가 발생할 때도 해석상 사건언어본이 다른 언어본에 우선한다(Koźbiał, 2020, p. 39). 즉, 판결문에 따라 24개 회원국 언어 가운데 1개의 사건언어본만이 정본이며, 나머지 언어본은 참고본의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정본인 사건언어본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1차 독자로 하지만, 기타 언어본은 해당 판결을 참고하고자 하는 회원국 법원 판사는 물론 입법가, 공무원, 학자, 해당 사건에 관심이 있

---

요소들은 당연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령이나 판결문 같은 법언어에 대한 Plain Language 접근법은 일반 공공언어와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ISO가 별도의 Plain Legal Language (PLL) 관련 표준(ISO 24495-2)을 제정한 사실로도 확인된다(유정주, 2025). 일반 국민을 포함한 2차 수신자의 사법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경우와 같이, 사실관계(factual details)를 상세히 기술하고 인정사실(findings)은 보다 직접적이고 단순화된 방식으로 제시하는 언론홍보자료나, 법학도, 법조인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Factsheets, Case-law Guides 등 법리 요약물 SNS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Brannan, 2021, pp. 219-220).

는 일반 시민 등이 모두 1차 독자가 될 수 있다.

반면, 한국과 같은 단일언어 국가의 판결문 번역은 어떤 경우에도 정본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책임하에 작성된 판결이나 결정의 번역은 ‘공식번역(official translation)’으로 지칭 가능하고, 그 외에 로펌이나 법률연구기관, 법학 관련 출판사에서 작성한 비공식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본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는 ST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Cao, 2007, p. 103). 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판결문 번역의 목적은 ‘규범적’이 아닌 ‘정보적’이며, 외국어 번역은 국내외의 법학자, 기업가, 법률가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례로, 한국의 대법원 판례 번역 책임기관인 법원도서관이 의도한 TT의 수신자는 학술 또는 참고 목적으로 한국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외국의 법학자, 사법기관 종사자(판사, 로클릭 등 포함), 소송대리인 등 법률전문가 및 한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다.<sup>5)</sup> 법원도서관은 대법원에 상고되지 않은 사건 중 중요 하급심 판결을 선별해 2011년부터 「하급심 영문판례집」도 발간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외국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 법학자나 법조인들에게 한국의 법문화와 제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신자는 대법원 판례 번역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sup>6)</sup>

즉, 한국에서 제도 법률번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판결문의 영어 번역

5) 법원도서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주요 판결 및 결정의 영문 번역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 교환을 통한 사법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국내외 법률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일반인들이 한국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이루어진다.

6) EU의 경우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1950)’, 2010년 ‘형사절차에서의 통역 및 번역권에 관한 지침 2010/64/EU(Directive 2010/64/EU on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2010)’ 등을 통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규정하고 판결문, 공소장, 기소장(charge or indictment), 체포영장(arrest warrant) 같은 문서의 서면 번역 또한 중요한 언어권 보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단일언어 국가인 한국의 경우 이는 제도 법률번역의 주요 관심 사안이 아니다.

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번역’이 아닌, ‘법원의 이익을 위한 번역’에 해당하며(Herráz et al., 2013, pp. 103-104), 공정한 재판보다는 핵심적인 사법 정보에 법조인들이 접근하도록 돕고, 해외에 한국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관의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번역 오류나 ST-TT 간 불일치 발생 시 정본번역과 같이 기관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소송 위험을 발생시키기보다는, 기관의 정치적, 이미지 관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2.2 판결문 번역의 품질 지표

다음으로는 판결문 번역의 품질지표를 살펴본다. 전 세계 주요 법률번역 기관 및 법률번역학에서 제시하는 법률번역의 공통 품질지표는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이며, CJEU의 품질보증 절차 역시 이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된다(Koźbial, 2017). 다언어 법률텍스트에서 정확성은 ‘일치(concordance)’ 또는 ‘법적 등가(legal equivalence)’로도 명명되며, 단순히 용어 및 구문의 의미상 일치가 아니라, 해당 표현에 대한 법원의 동일한 해석 및 적용, 즉 법적 효과(legal effect)의 일치로 정의된다(Šarčević, 1997, p. 73). 판례법 및 모든 절차 관련 문서의 경우에도 법적 효과의 일치는 핵심적인 품질요소로, CJEU는 판결문 번역의 목표를 ‘회원국 국내 법원에 의해 동일하게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는 병렬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 또는 법적 등가는 각 법체계의 전통, 역사, 사회적 관습 및 정치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법적 범주 및 개념 차이로 인해 달성이 어렵거나 때로 불가능하다. 다언어 조약 정본의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제33(3)조,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55조 등에 따라 언어본 간 동등한 의미를 ‘의제(legal fiction)’를 통해 가정하는 ‘강제적 법적 등가’ 방식을 활용한다(European Union, 1992; United Nations, 1969). 그러나 판결문 번역의 경우 이러한 의제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CJEU 등 번역기관은 해당 법체계 및 법률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비교법 방식을 활용해 번역·감수를 수행하는 인력 차원의 접근과, 등가 관계 및 수준이 명시된 기번역 용어들을 수집한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작업공정 차원

의 접근을 통해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활용한다(Kozbiat, 2017, pp. 155-156).

다음으로, 일관성은 ‘조율(harmonization)’로도 지칭되며, 해당 텍스트 내·외의 용어 일관성을 의미한다. 법률번역에서 일관성 적용 대상인 ‘용어의 종류(term type)’로는 용어(term), 축약형(abbreviation), 공식(formula), 속칭(short form)과 함께,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구소인 어구(phrase)가 포함된다(유정주, 2019, p. 174). 또한, 일관성의 수준 역시 기존 텍스트(특히 법령과 같은 상위텍스트)와의 용어 일관성 외에도, 해당 기관이 수립한 번역지침, 번역메모리, 스타일가이드 등의 모범관행 및 기존 관행과의 일관성까지 확장된다. 법령과 같은 1차 장르의 경우 강력한 수직적, 수평적 상호텍스트 링크(조문의 인용)가 존재하므로, 텍스트 내 및 텍스트 간 변이가 허용되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반면, 판결문 같은 2차 장르는 보다 해석적이고 맥락화되어 있어 스타일이나 응집성 변이가 허용되므로, 요구되는 일관성의 수준이 법령보다 낮을 수 있다(Biel, 2023, pp. 102-103). 그러나 이는 판결문의 품질지표로 일관성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변이에 대한 용인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판결문의 경우 판단의 주요 근거(authority)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의 인용 부분, 심급별 관련 표현, 정형어구 등은 반드시 기존 번역과 최대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확성은 흔히 TL 장르 관습과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텍스트일치성(textual fit)’이나 ‘자연스러움’, ‘수용가능성’ 등으로 이해된다. 이는 TT가 TL 독자들의 해당 장르에 대한 기대규범을 충족시켜 긍정적으로 수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가독성’과 호환되는 개념은 아니며, CJEU 및 ECtHR 판례법상 정의된 다언어 법률텍스트의 ‘명확성’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판례법은 의도된 모호성(vagueness)을 제외하고 의도되지 않은 애매성(ambiguity)이 없다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규정한다(Schilling, 2010, p. 49). 즉, 해석상의 ‘애매성 없음’은 다언어 법률텍스트의 명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다.

상기와 같은 법률번역 품질지표가 판결문 번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CJEU의 외주번역 입찰명세서가 있다. 아래

<표 1>은 2026년 1월 개시된 CJEU(2025c)의 최신 외주번역 입찰명세서(COJ-PROC-25/025)에 제시된 계약자 기본 품질요건을 상기의 품질지표에 대응시켜 본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CJEU가 요구하는 번역 품질관련 계약자 준수사항 가운데 대부분이 정확성과 일관성 지표에 해당하고, 판결문 작성언어의 핵심 품질지표인 명확성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sup>8)</sup> 이는 법령과 마찬가지로 다언어 정본 판결문 제작 환경에서 ‘정확성’, 즉 정본 간 용어 및 표현의 언어 간 일치(interlingual concordance)가 번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을 보여준다. 또한 판결문 번역의 경우에도 각종 스타일가이드, 전례집, 참고문서 등의 표준화 도구를 통한 제도적 통일성 달성이 여전히 기관의 최우선 고려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시성(timeliness)의 경우 직접적인 번역 품질지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의 관리 요소임을 보여준다.<sup>9)</sup>

표 1

CJEU 입찰명세서의 외주번역 품질요건

계약자 준수사항	품질지표
TL의 정확하고 엄밀하며 정밀한 사용, TL의 적절한 법률언어 및 법률용어의 엄격한 사용, 관련 법령 및/또는 판례의 정확한 인용, EU 및 해당 회원국의 관련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정확성
재판소의 구체적 지시 준수, SL, TL 참고문서에 사용된 법률용어의 엄격한 준수, 관련 법령 및/또는 판례의 정확한 인용 <sup>10)</sup> , (필요시) 법원의 Vade-Mecum(작업 지침) 준수	일관성

7) 입찰명세서(tender specifications)는 내부 번역가를 위한 번역지침은 아니지만, CJEU가 번역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는 외부계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번역지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된다.

8) 상기 입찰명세서의 기본 품질요건에는 명확성 관련 지표가 발견되지 않지만, 낙찰자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술제안서의 번역테스트 품질기준에는 ‘언어 측면(Linguistic aspects)’에 명확성(clarity)이 명시되어 있다(CJEU, 2025c, p. 29).

9) CJEU에서 예비판결 절차의 전체 소요기간은 2017년 기준 약 15.7개월인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6개월가량이 번역으로 소요되어 전체 소송기간 단축 노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Van der Jeught, 2019).

10) ‘관련 법령 및/또는 판례의 정확한 인용’은 정확성과 일관성 지표에 모두 해당하

	명확성
발주서에서 정한 납기 준수	적시성

판결문 번역에서 기관의 주요 관리 대상 품질지표인 일관성, 즉 법령과 선례, 관련 조약에 사용된 기번역 표현의 정확한 반영은 ‘동일한 법적 효과의 달성’이라는 법률번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지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관성은 기존 번역을 언어적 전례로 삼아, 전례에 포함된 오류와 비일관성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는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Prieto Ramos, 2014). 따라서 기관은 단순히 제도적 통일성을 이유로 기번역 표현을 ‘복붙’하는 대신, 기관 간 협업 하에 등가의 수준이 낮거나 오류가 명확한 용어를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도된 수신자에게 ‘애매하지 않고 의심스럽지 않도록’ 충분히 명확한 번역을 생산하여, 최소한 판결문 번역의 1차 수신자인 판사, 변호사, 행정가, 기타 법률의 해석 및 적용 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자연스러움’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 3. 판결문 영어 번역의 주요 고려사항

판결문의 구조는 법계 및 국가별로도 다를 뿐 아니라, 법원의 종류 및 심급, 소송영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계 및 심급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건명 및 법원명, 당사자 및 대리인의 표시를 포함한 표제부, 소송경과, 사실, 관련 법규정, 당사자의 주장과 논거, 쟁점, 판단(판결이유), 주문 등은 공통 요소에 해당한다(오세혁, 2009). 이를 소통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판결문의 일반적인 거시구조는 사건의 표시, 기초사실 정립, 사건의 쟁점 기술, 판결 선고의 무브 구조로 나눌 수 있다(Bhatia, 1993). 한국의 (민사) 판결서 역시 법원명과 재판부의 표시, 사건의 표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등 형식적 기재사항과, 주문, 청구취지, 이유, 작

성일, 서명날인으로 구성된다. 아래 <표 2>는 한국의 일반적인 민사 판결서의 거시구조별 구성요소를 바티아(Bhatia, 1993)의 소통목적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표 2  
한국 하급심·상급심 (민사) 판결서 구성요소

구분	하급심	상급심
사건의 표시 (identifying the case)	·사건명 ·원고/피고 ·변론종결 ·판결선고 ·청구취지	·사건명 ·원고/피고, 상고인/피상고인 ·원심판결 ·판결선고
판결선고 (pronouncing Judgment)	주문	주문
기초사실 정립 (establishing facts of the case) + 쟁점의 기술 arguing the case	<이유>: 제2방법 기초사실/인정사실 (인정사실 통합형) -기초사실(인정사실): 간접사실 포함 -당사자의 주장 -판단 -결론	<이유> -사안의 개요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결론
i) 사건의 경과 진술(stating the history of the case) ii) 논거 제시(presenting arguments) iii) 구속력을 갖는 판단의 제시(deriving ratio decidendi)	<이유>: 수정된 제2방법 기초사실 (인정사실 분리형) -기초사실(다툼없는 사실/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사건의 쟁점) -판단: 인정사실 + 판단 -결론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 (민사) 판결서의 구성 요소별 번역 관련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사례로 사용한 영문 판례는 법원도서관(n.d.-a)이 2025년 이후 웹사이트에 게시한 최신 판례 가운데, AI 번역임이 명시된 하급심 판결서들이다.<sup>11)</sup> 사건의 표시나 주문, 기초사실 같은 구성요소들은 판결서에

서 기본이 되는 표제어들로, AI 번역에서도 1차적으로 눈에 띄는 요소들이다. 지면 제약상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루는 대신,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들을 위주로 살펴본다. 제시한 번역 대안은 미국 민사소송절차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기관의 비판적 검토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용어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1 변론종결, 청구취지, 주문의 번역문제

형식적 기재사항(사건의 표시) 가운데 AI 번역에서 눈에 띈 사항은 ‘판결선고’와 ‘변론종결’ 부분이다. 기존 대법원 영문판례의 경우 ‘판결선고’를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42185 Decided March 27, 2025’와 같이 ‘Decided’를 사용하여 사건명과 함께 번역해 왔다(법원도서관, n.d.-a). 이는 기관의 스타일 규범으로 용인가능한 번역이긴 하지만, ‘decided decision’으로 읽혀 가독성 또는 TL 관행과의 부합성을 나타내는 ‘텍스트 일치성’이 낮다. AI 번역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Chang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24No2513, dated June 13’와 같이 미국 민사소송 판결서의 일반 표현인 ‘dated’를 사용하여, 영미법계 수신자들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현재와 같이 사건명과 함께 번역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adjudged’나 ‘dated’ 다음 날짜를 기재하는 방식이

- 
- 11) 대법원 영문 판례의 경우 ‘This translation is provisional and subject to revision’이라는 문구가, 하급심 영문 판결서의 경우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and is not officially made by the court. It may contain interpretive translations and errors’가 각각 Disclaimer로 기재되어 있다. 하급심 영문 판결서의 경우 Lexis+AI를 사용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본 하급심 판결서 영문번역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27471,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2067,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2067,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3129,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95059 등이며, 비교를 위해 법원도서관의 기존 대법원 판례 번역본도 일부 활용하였다.
- 12) 미국 상소심 판결서의 경우 한국의 ‘판결선고’에 해당하는 정형화된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범적으로는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FRAP, 2023) 제36조에 ‘A judgment is entered when it is noted on the docket’이라는 규정이 있고, 실제 판결서에서는 주문에서 “ORDERED AND ADJUDGED this \_\_\_ day of \_\_\_” 또는 “DATED: \_\_\_”와 같은 형식이 주로 사용된다.

용인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론종결’의 AI 번역인 ‘Conclusion of Pleadings’, ‘Closure/Closing of Pleadings’에 대해서는 비교법적 개념 확인이 필요하다. AI는 ‘변론 전체의 취지’ 역시 ‘Gist/Purport of the entirety of the pleadings’로 번역하는 등, ‘변론’을 모두 ‘pleadings’로 번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미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2018)에서 ‘pleading’이란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 청구, 부인 또는 항변을 진술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적 서면’을 의미하며, 특히 FRCP에서는 원고의 소장(complaint)과 피고의 답변서(answer), 반소·교차청구에 대한 답변, 제3자 소장 및 답변서 등으로 ‘pleading’의 범주를 제한한다.<sup>13)</sup> 이에 따라 다수의 문헌에서 ‘pleading’을 ‘소답’, ‘소답서면’, ‘소장 및 답변서 등’으로 번역하며, 소장 및 답변서의 교환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소답 교환절차’로 번역하기도 한다(오규성, 2017, p. 36). 즉, 미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pleading’은 소송을 개시·구성하는 서면 서류들을 가리키는 문서 중심 개념이다.<sup>14)</sup>

반면, 한국에서 ‘변론’이란 ‘변론(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로 규정된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72조). 즉, 변론기일(및 그 준비절차)을 통해 쟁점과 증거가 법원 앞에서 ‘현출’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여, 소장·답변서·각종 준비서면에서부터 증거목록·서증·증인·감정·검증 관련 서류, 그리고 각종 신청서류까지 폭넓은 서면과 구두 진술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pleading’이나 특정 쟁점이나 중간단계 신청에 대한 기일을 나타내는 ‘hearing’, 서면 제

13) In federal civil practice, the only pleadings allowed are a complaint, an answer, a reply to a counterclaim, an answer to a cross-claim, a third-party complaint, and a third-party answer. (Fed. R. Civ. P. 7(a))

14) 2026년 1월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민사소송법 134조 번역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를 ‘The parties shall conduct pleadings in the court in regard to the litigation’으로, ‘법원이 변론을 열다’를 ‘pleadings are (to be) held’로 번역하고 있어, AI가 이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conduct pleadings’는 ‘소장·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해당 조문상 변론(심리)의 의미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출 후 짧게 이루어지는 구두 논변인 ‘oral argument’ 등의 용어 모두 맥락에 따른 ‘변론’의 부분 등가어(partial equivalent)가 될 수 있을 뿐이다.<sup>15)</sup>

따라서 ‘변론종결’의 경우 ‘Close of Evidence’, ‘Conclusion of (the) Trial’ 같이 해당 심급에서의 증거조사·공방의 종결을 나타내는 표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sup>16)</sup> ‘변론전체의 취지’ 역시 ‘Purport of the entirety of the pleadings’보다는, 법원이 심증을 형성한 전체적인 소송자료의 취지 개념을 반영하여 ‘the entire record of the trial’이나 ‘the totality of the evidence’ 등을 활용한 기능적 등가 표현을 고려해 볼 수 있다.<sup>17)</sup>

- 15) 미국 민사 판결서의 경우 한국의 ‘변론종결’에 1:1로 대응되는 정형화된 표현은 없다. 다만, ‘after both sides have rested and the evidence is closed’, ‘after all the evidence has been presented and both sides have rested’와 같이 양측의 증거제출·주장이 종료되었음을 서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다.
- 16) 일례로 미연방 민사소송규칙(FRPC, 2018) Rule 52(1)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심급의 사실심 종료 표현으로 ‘close of the evidence’를 사용하고 있다: In General. In an action tried on the facts without a jury or with an advisory jury, the court must find the facts specially and state its conclusions of law separately.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may be stated on the record after the close of the evidence or may appear in an opinion or a memorandum of decision filed by the court.
- 17) ‘변론 전체의 취지’란 증거조사 결과 이외에 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진술의 내용, 태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당사자의 인적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사항을 포함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참작될 자료를 의미하여(사법연수원, 2024: 67),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미국 민사 소송 절차법상 독립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법상 개념을 최대한 반영한 기능적 대응 표현으로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and the evidence presented at trial’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판결서 인정근거 내에 정형화된 구문으로 삽입하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 또한 ‘overall purport of the entire proceedings’ 같이 ‘변론’의 의미를 ‘proceedings’까지 확대할 경우 한국법상 ‘변론’이라는 특수한 의미가 ‘소송’이나 ‘절차’ 전체를 나타내는 ‘proceedings’의 일반적 의미에 희석될 우려가 있다. 법률번역에서 기능적 등가어 선정은 핵심개념과 부수개념의 비교법적 비교결과 외에도, 해당 문서의 법적 지위와 성격, 기존 실무 번역 관행의 고려, 언어의 경제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유정주, 2020). 어떠한 용어를 선택하더라도 개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기관의 신중한 기능적 등가어 결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통해 개념상 차이를 외국 수신자들에게 ‘terms of art’로 인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구취지’의 번역을 살펴본다. 법원도서관 AI 번역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취지’의 번역어는 ‘Purpose’, ‘Purport’ 또는 ‘Purport of Claim’이다. 이는 ‘취지’ 또는 ‘청구’와 ‘취지’에 대한 단순한 직역으로, 영미법계 독자들에게 원고가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어렵다. 미국 민사판결서의 경우 ‘청구취지’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대신, 소장에서 ‘Prayer for relief’에 기재한 내용을 판결서의 주문에 기재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Prayer for relief’를 한국의 ‘청구취지’에 대한 기능적 등가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취지’의 개념이 원고가 해당 소를 통해 법원에 구하는바, 즉 구제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로펌 등 실무 번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Relief (Remedies) Sought’나 ‘Relief Claimed’와 같은 표현도 용인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문’의 경우, 기존 대법원 영문 판례의 경우 ‘Disposition’을, 하급심 판결에 대한 AI 번역의 경우 ‘Disposition’과 ‘Order’를 혼용한다. 한국의 판결서에서 주문은 ‘주된 주문’과 ‘종된 주문’으로 나뉘어, 전자는 각하, 인용, 기각과 같이 청구에 관해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후자는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가집행선고’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재한다. 또한 기관력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으로, 그 중요성을 반영해 형식적 기재사항 바로 다음에 독립된 항목으로 기재하게 되어있다(사법연수원, 2023). 반면, 미국 판례의 용법상 ‘Disposition’은 ‘affirm’, ‘remand’, ‘dismiss’와 같은 사건의 최종 처리결과를 요약하는 표현으로, 한국 판결문의 ‘주된 주문’과는 부합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종된 주문’을 포괄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주된 주문’과 ‘종된 주문’을 포괄하는 표제(heading)로는 ‘(Final) Judgment’나 ‘Order’가 있고, FRCP (Form31)에 제시된 ‘It is Ordered and Adjudged’, 또는 ‘It is ordered’, ‘So ordered’ 같은 표현을 주문 신호표현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주문 신호표현은 reverse(remand), overrule, affirm, grant, deny 등 ‘주된 주문’과 공기(co-occur)하거나, ‘The Plaintiff shall recover from the Defendant the amount of \$250,000 as awarded by the jury’와 같은 ‘종된 주문’과 공기한다. 이 경우 ‘주된 주문’과 ‘종된 주문’은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를 주어로 한 피동문<sup>18)</sup>, 또는 ‘we’를 주어로 한 능동문<sup>19)</sup>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존 대법원 영문 판례에 사용된 ‘Disposition’보다는 일부 AI 번역에서 사용한 ‘Order’를 중심으로 기능적 등가어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sup>20)</sup> ‘It is Ordered and Adjudged’와 같은 FRCP의 주문 신호표현은 한국 판결서의 경우 ‘주문’의 표제 부분이 아닌 ‘결론’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2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의 번역문제

다음으로 판결서의 핵심이자 본론인 ‘이유’의 구성항목 가운데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의 번역문제를 살펴본다. 1998년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에 따라 ‘이유’는 ‘요건사실분류형’, ‘인정사실통합형’, ‘쟁점별판단형’ 중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대법원, 1998). 그러나 98년 예규 이후 대부분의 민사 판결서가 기초사실-당사자의 주장-법원의 판단의 3분 체계로 구성된 ‘인정사실통합형(제2방법<sup>21)</sup>)’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1991년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에서 ‘기초사실’과 ‘인정사실<sup>22)</sup>’을 한꺼번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제2방법의 경우 ‘기초사실’ 항목에서 배경사실(기초사실)과 쟁점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 내용(인정사실)이 하나의 연속된 서

18)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Obergefell v. Hodges, 576 U.S. 644, 681 (2015))

19) “Accordingly, we reverse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Highsmith v. Highsmith, 587 S.W.3d 771, 781 (Tex. 2019))

20) ‘Judgment’의 경우 한국 번역 관행상 판결서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활용되어 동일 판결문 내에서 ‘주문’의 번역어로 사용 시 해석상 애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제연구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주문’의 번역어로 ‘text’를 사용하고 있는데, ‘(main) text’는 판결서에서 본문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 미국 절차법상 이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론 부분’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

21) 인정사실통합형이란 기초사실(인정사실) 항목에서 간접사실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을 모두 기재하고, 판단의 항목에서 청구원인, 항변 등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고 결론에 이르는 추론과정을 기재하는 방식을 말한다(사법연수원, 2024).

22) 인정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가운데 판사가 증거를 토대로 취사선택하여 인정 한 사실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형성된 심증 또한 인정사실에 포함된다.

사로 통합·서술된다. 따라서 제2방법의 ‘기초사실’은 형식상 명명과 달리 증거에 의해 인정된 인정사실을 함께 기술하므로, 실질은 영미법계 판결문의 ‘Findings of fact’, ‘Factual findings’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절차법상 ‘Findings of fact’는 재판부(또는 배심)의 증거평가 결과로 확정된 사실의 진술을 의미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재판부가 하나의 서사로 정리했거나, 당사자의 주장과 명확히 구분되고 법원이 자신의 사실인정 결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문맥상 명확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제2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안, 즉 기초사실(인정사실)에 주변사실이나 불필요한 간접사실까지 기재될 경우, 이를 ‘Findings of fact’의 정의, 즉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한 요증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관 차원에서 ‘기초사실’ 항목 제목은 ‘Findings of fact’로 번역 관행을 용인하되, 불필요한 주변 정황이나 당사자 주장은 개별 문장 단위의 번역전략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 구성방식으로 수정된 제2방법이 있다. 기초사실이란 이름으로 주변사실을 무분별하게 기재하거나, 불필요한 간접사실까지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정사실통합형’의 3분 체계는 유지하되 ‘쟁점별판단형’ 방식을 더하여, 기초사실에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만 기재한 다음, 판단 단계에서 ‘인정사실’과 ‘판단’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수정된 제2방법(‘연수원 제2방식’)도 널리 사용된다(정승연, 2024). 이 경우, ‘기초사실’이 증거 인정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순수한 서술적 전제에 그치고, 별도의 ‘인정사실’ 항목에서 자백·증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기술한다면, ‘기초사실’은 보다 중립적인 ‘Factual background’, ‘Factual context’, ‘Background’ 등으로, ‘인정사실’은 ‘Findings of fact’로 번역 가능하다.<sup>24)</sup> 같은 관점에서 다툼없는 사

23) 일례로, 주변사실의 경우 ‘find’ 같이 증거에 기초하여 요증사실을 인정하는 표현, ‘hold’ 같이 법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하고, ‘By way of background’와 같이 배경임을 분명히 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4) 연수원 제2방식의 ‘기초사실’의 경우 원칙상 당사자 간 다툼없는 전제사실만 기재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초사실’ 부분 하단에 ‘인정근거’를 함께 배열하는 통합형 구조가 보편적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기초사실과 요증사실이 사실상 하나

실,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포함하는 ‘인정근거’ 역시 ‘Basis of Findings’, ‘Grounds for Findings’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분석대상 법원도서관 AI 번역의 경우, 제2방법과 수정된 제2방법의 구분 없이 기초사실은 ‘Basic facts’나 ‘Background facts’로, 인정사실은 ‘Acknowledged facts’로 직역하였다. 또한 동일 판결서 내에서 ‘인정근거’와 ‘인정사실’을 모두 ‘Acknowledged facts’로 번역하거나(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판결), ‘인정’의 맥락에 ‘recognize’와 ‘acknowledge’를 혼용한 경우도 확인된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27471). 미국 판례 및 국제형사재판소(ICTY) 판례상 ‘acknowledged facts’는 재판부가 아닌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사실’을 의미하여<sup>25)</sup> 재판부의 사실인정보다는 수정된 제2방법의 ‘기초사실’에 대한 기능적 등가어에 가깝다. 따라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증거를 ‘인정’하는 맥락에는 ‘acknowledge’가 아니라 ‘the court finds...’로 번역하되, 증거의 허부 맥락을 강조하는 부분에는 ‘the court admits the evidenc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기능적 등가어가 될 수 있다.

### 3.3 법령과 판례의 인용 형식 준수

판결문과 같은 사법담화의 특성 중 하나는 국내 법령, 국제법, 기존 판

---

의 사실인정 블록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8년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재판예규 제625-1호) 제9조를 보면 ‘인정근거’를 인정 사실의 모두 또는 말미에 일괄 기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사실’이라는 형식상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인정근거’가 말미에 달려있다면, 실제로는 인정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면 수정된 제2방법의 ‘기초사실’ 역시 실제로는 제2방법의 ‘인정사실’과 차이가 없고, 이를 모두 ‘Findings of fact’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 25) 일례로 워싱턴주 대법원은 ‘acknowledged facts’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다투지 않은 사실’로 정의한다: “『Acknowledged』 facts include all those facts presented or considered during sentencing that are not objected to by the parties. [State v. Grayson, 154 Wn.2d 333, 111 P.3d 1183 (Wash., 2005)]. 국제형사재판소(ICTY) 판례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acknowledged facts’를 피고인이 합의서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 즉 다투지 않은 사실로 서술하고 있다 [Prosecutor v. Nikolić, IT-94-2-A, Judgment on Sentencing Appeal, 8 March 2006].

레 등과의 높은 상호텍스트성이다. 판결문의 번역은 본질적으로 ‘원문에 사용된 용어의 과거 역사를 해독(decipher)’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용의 출처를 검증하고, 해당 인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Tomić & Montoliu, 2013, p. 240). 특히 법원도서관 영문 판례의 경우 외국의 법률가, 학자들이 필요시 해당 인용을 정확히 참조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용방식을 모든 번역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외교부, 법제연구원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관 간 스타일가이드를 수립하여 인용방식을 표준화하는 방법, 또는 전 세계 법령과 판례 인용의 표준 지침서인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22nd ed.)(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et al., 2020)<sup>26)</sup>의 한국편에 기재된 인용방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대법원 기존 판례 번역본들을 살펴본 결과, 판례의 인용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을 ‘(Supreme Court Decision 89Daka20252, Apr. 10, 1990)’와 같은 형식으로 번역하고, ‘등 참조’가 붙어 다수 판례를 적시하는 경우는 ‘see, e.g.’를 사용하였다. 반면, AI 번역인 하급심 영문 판례의 경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을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314022, dated July 11, 2024)’와 같이 번역하여 선고일자 표기방법이 대법원 영문 판례와 같지 않았고, ‘etc.’ 사용 관련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sup>27)</sup> 판결문에서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26) 미 의회도서관과 대법원의 공동작업으로 2009년 19<sup>th</sup> ed.부터 한국편이 실리기 시작했으며, 21<sup>st</sup> ed부터 한국편이 기재된 ‘Foreign Jurisdictions’(T2)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국편에는 한국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주요 판례는 물론 행정·가정·특허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영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과, 법령 및 판례의 인용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27)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2067판결에서는 ‘(대법원 2000. 11. 4. 선고 99다1243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등 참조)’(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9Da12437, dated November 24, 2000; Supreme Court Decision on 2020Da258824, dated July 11, 2024; etc.)와 같이 번역하여, e.g.와 etc.가 중복 사용되고 있다.

법령과 아울러 1차적 권위(primary authority)를 갖는 중요한 요소로, 상·하급심에서 표준화된 스타일로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법령이나 조약 인용의 경우, 국내 법령<sup>28)</sup>과 조약의 인용 모두에서 원문 작성의 오류나 기존 공식 번역과의 일관성을 무시한 자의적인 AI 번역으로 인해 부정확성이나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2067 판결> 국문본에서는 ‘순환출자’의 정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2조 제16호’를 ‘공정거래법 제2조 제16조’로 오기하고 있는데, AI 번역본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Article 2(16) of the Fair Trade Act’와 같이 번역함으로써, 제2조 제16항으로 오역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95059 판결>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를 법령 번역책임기관인 법제연구원의 조항 표기 방식인 ‘subparagraph 1 of Article 2’가 아닌 ‘Article 2(i) of the Product Liability Act’와 같이 번역하거나, 동법상 ‘제조물’, ‘제조업자’에 대한 정의 번역도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 확인 없이 AI가 자의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AI가 자동 번역한 경우에도 인용의 번역은 원문의 오류, AI 인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반드시 인간의 추가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AI 번역을 전면 확대해 하급심 판결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영문판례 역시 AI가 생산할 경우, ‘Bluebook’의 표준화된 인용방식을 상·하급심 판례 번역 모두에 적용하고, 이를 인간 검수자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도 유의미한 대안이다. ‘Bluebook’ 최신판은 한국의 판례 인용 시 <로마자 표기 법원명> [<영문 법원 약칭>], <선고일>, <사건번호> (<공보·판례집 약칭 <권수 또는 연도>, <첫 페이지>, <필요시 참조 페이지>) (<국가 약칭>)의 형식을 권고한다. 즉, 대법원 판결의 경우 Daebeobwon [S. Ct.], Sep. 9, 1997, 96Da47517 (S. Kor.)와 같이, 헌재 결정의 경우 Hunbeobjaepanso [Const. Ct.], Oct. 21, 2004, 2004Hunma554, 556 (consol.)(Hungong 98, 1095) (S. Kor.)와 같이, 고등법원 판결의 경우 Seoul Godeungbeobwon [Seoul High Ct.], Sep. 18, 1966, 95Na14840 (S. Kor.)와 같은 인용형식을 사용한다. 한국의 국내법원 판

28) 법원도서관은 법령의 인용에 대한 번역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번역을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법원도서관, n.d.-b).

결임을 고려해 국가 약칭인 (S. Kor.)를 제외한 나머지 형식을 사용한다면 의도된 수신자인 영미법계 법률전문가의 한국 판례 이해 및 인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29)</sup>

#### 4. CJEU 번역품질보증 사례의 시사점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원도서관이 제공하는 대법원 영문판례 및 하급심 영문판례(AI 번역)는 판결서의 기본 구성요소 번역조차 비교법적 관점에서 기능적 등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하급심 판례 간, 또는 하급심 판례 간 기본 요소 번역 스타일조차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현재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법학자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가 기관 밖에서 외주계약을 통해 번역을 수행하고, 이를 소수의 내부 품질관리자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일언어 국가에서 수행되는 정본이 아닌 참고 목적의 판례 번역에 CJEU 같은 다언어 정본생산 기관에 적용되는 수준의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기관의 가용 예산이나 번역품질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목적과 리스크 평가를 통한 외주번역 품질관리 및 최적의 감수 수준 결정, 신뢰할 만한 용어자원 구축 및 IT 투자 같은 제도번역의 품질보증 방안들은 AI 번역 확대와 관련해 기관의 장기적 번역품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판례 번역기관이라 할 수 있는 CJEU 다언어총국(Directorate-General for Multilingualism, DGM<sup>30)</sup>)의

29) ‘Bluebook’에서 제시한 한국 법령(statutes and decrees) 인용 방식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령명의 음차(borrowing) 부분과 국가 약칭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Bluebook’에서 제시한 법령 인용방식의 예이다: Jabonsijanggwa geumyungtujae gwanhan beobyul sihaengryung [Jabonsijangbeob sihaengryung]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s Act] art. 6 para. 4 subpara. 2 item (a) (S. Kor.).

30) CJEU의 언어서비스국은 다언어총국(DGM)으로 지칭되며, 이는 다시 통역국(Directorate for Interpretation)과 법률번역국(Directorates A and B for Legal Translation)으로 나뉜다. A, B는 24개 공식 언어별 언어부서(language units)로 각

번역품질보증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여, 한국 판례 번역기관의 장기적 품질 보증 절차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4.1 인적자원 및 작업공정 관리

CJEU의 QA 접근은 인적자원과 구조화된 작업공정을 핵심 기둥으로 번역품질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인적자원은 내부의 법률언어전문가(lawyer-linguists), 외주번역을 수행하는 외부계약자, 지원인력 및 프로젝트관리자(PM)가 포함되며, 작업공정에는 번역과정 및 기관 내, 기관 간 협업의 적절한 구조화 달성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Kozbiał, 2017, p. 163).

CJEU는 판결문 및 각종 절차문서의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가 및 감수자 역량을 EU 기관들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일반 번역가가 아닌 해당국 법률언어전문가가 번역 및 감수 모두를 수행한다.<sup>31)</sup>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같은 기관의 경우에도 법률언어전문가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번역국이 아닌 법무국(Legal Services) 소속으로 일반 번역가가 번역한 법률번역(주로 정보번역)에 대한 법적 내용 검증이나 언어본 간 일치 보장만을 담당한다(Van der Jeught, 2019). 또한 번역가 외에 별도의 용어전문가(terminologist) 직군이 존재하여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신뢰성 유지를 전담하는 ‘번역가 + 용어전문가’의 이원 구조가 일반적이다.

---

기 나뉘며, 법학 또는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법률언어전문가들로 구성된다. CJEU에는 2024년 기준 608명의 법률언어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CJEU, 2025b).

- 31) 법률언어전문가의 채용은 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EPSCO)를 통해 진행하며, 채용규모는 각 언어부서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EPSCO의 법률언어전문가 공개경쟁시험은 사전이나 기타 참고자료 없이 응시자가 독립적으로 법률번역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NMT가 생성하는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독립적 번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Wright, 2025, p. 66). 자격요건 및 역량으로는 해당 언어국의 법학학위와 완벽한 해당 언어 구사능력, 해당국과 다른 EU 회원국의 법체계와 CJEU 판례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 법률가와 언어전문가로서의 양방향 전문능력이 요구된다(Kozbiał, 2017, pp. 42-44).

반면, CJEU의 경우 법률언어전문가가 번역·감수는 물론, 용어의 선택, 기존 판례 번역 및 내부 스타일과의 일관성 유지, 신규 용어의 제안, 검증된 용어의 데이터베이스 반영 등 용어전문가 업무 및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점검하는 교열 작업까지 수행하는 일원 구조로 되어있다. 즉, CJEU의 경우 1) 외주번역 관리, 다언어도구 지원, 번역계획 수립, 판례법 공개와 발간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부서 소속 지원인력, 2) 일상적인 번역·감수·교열을 실시하는 법률언어전문가, 3) 기관 내 QA 정책과 작업공정을 총괄하고 정오표(corrigenda) 형태의 번역 후 오류 피드백을 담당하는 국장급 수준의 품질정책조율관(Qualty Policy Coordinator)이 계층적 품질관리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3>은 CJEU의 일반적인 번역 작업공정을 관련 인력과 함께 정리한 내용이다.

또한, 번역 공정 면에서도 DGT와 같이 함목적성 및 중요도에 따른 문서 분류와 이에 따라 다른 수준의 품질관리 수준을 규정하는 대신, 사법문서 번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내부 번역에 전체 감수(revision)를 실시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DGT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본 법률번역(Category A)에 대해서만 전체 감수를 수행하는 반면, CJEU는 외주번역을 제외한 모든 내부 번역 문서에 대해 ‘2인 확인 원칙(4-eyes principle)’에 따라 동일 언어부서 내 다른 법률언어전문가가 내용, 법리, 용어, 문체, 맞춤법 등을 모두 점검하는 감수 및 교열 작업을 구동하고 있다.

표 3  
CJEU의 번역 작업공정

작업공정	해당 내용	담당자
번역 전 단계 (pre-translation)	번역 착수 전, 해당 텍스트에서 이미 번역된 부분 또는 기존 문서와 유사한 부분(빈출 구문, 법령이나 판례에서 인용된 부분 등)을 식별하여 자동 번역키트를 구성	접근가능성, Euramis 기반 자동 전처리(자동추출)
번역 단계 (translation)	원천텍스트(ST) 분석을 통해 해당 문서의 주제를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번역상의 문제를 식별-->용어 검색 및 관련자료 파악 -->CAT 툴과 번역메모리, 용어데이터베이스, MT 제안 등을 고려해 번역 진행	법률언어전문가

감수 단계 (revision)	해당 번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증(verify)하기 위한 목적으로, ST 및 기타 법원문서들과의 법적, 개념적 일치 여부 검토	(동료) 법률언어전문가/(필요시) 재판관
교열 단계 (proofreading)	목표텍스트(TT)의 형식적 정합성(formal coherence) 보장을 목적으로, 공개 전 최종 수정을 실시	(번역자나 감수자가 아닌) 법률언어전문가
번역 후 단계 (post-translation)	각 언어부서의 무작위 샘플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영역을 논의하고 정오표(corrigenda)를 발표하며, 용어노트를 작성하고 품질지침을 검토	품질정책조율관(Quality Policy Coordinator)

이들 인력자원은 높은 수준의 주제 역량과 비교법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CJEU는 정기적인 세미나, 회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외부의 법학자나 판사들의 다양한 법률주제 강의를 실시할 뿐 아니라, ISO 20771:2020(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20)에서 규정하는 번역가의 평생 전문직업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EU 기관들이 번역한 문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용어, 번역기법 등의 주제를 다루는 다수의 기관 간 실무그룹 참여를 지원한다(Kozbial, 2017, pp. 169-170).

특히 CJEU는 기관의 AI 도입을 탐색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인력의 역량개발(upskill)을 규정하고, 2022년 기존 인력의 재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신기술아카데미(Emerging Technologies Academy)를 출범시켰다(CJEU, 2023). 또한 다언어지원도구(Outils d'aide au Multilinguisme, OAM) 담당 부서가 IT서비스 부서와 협력하여 법률번역에 특화된 도구를 연구·개발하며, 번역 인력에게 해당 도구의 활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Wright, 2025). 특히,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외에도 NMT의 학습자료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AI 도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감독 등을 담당할 새로운 직군의 인적자원 확충 및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 4.2 도구자원 및 AI 활용

다음으로 CJEU QA 접근의 또 다른 축인 도구자원에 관해 살펴본다. 도구자원은 판결문 번역품질의 핵심 지표인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기관의 중요 해법이다. 특히 용어 데이터베이스와 번역메모리는 번역가들이 텍스트 내, 텍스트 간 신뢰도 높은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기존 번역과의 내용 일치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Koźbiał, 2017, pp. 160-161). 판결문 같은 2차 장르의 경우 변이에 대한 용인도가 법령보다 높은 하지만, 동일 사건에 대한 상·하급심 판결서 번역 간 용어 일관성 및 선택 번역과의 표현 일관성, 법령을 포함한 기존 법률텍스트와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텍스트 간 일관성 또는 연속성 유지는 품질보증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된다(Stefaniak, 2017, p. 116).

이에 따라 제도번역 기관은 템베이스, 법률텍스트 데이터베이스, CAT 툴과 같은 용어자원을 활용해 번역 시 용어 및 구문, 문장을 표준화하고 변이형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번역의 재활용과 텍스트 간 반복과 상호연결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자원이 기관 내외의 번역가, 법학자, 용어학자, 데이터전문가 등 인간 사용자 외에도, 상호연결된 각종 템베이스, CAT 플러그인, 기계번역 엔진, AI 같은 인간 외 사용자(machine users)에 의해 활용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Biel & Wasilewska, 2025). AI 번역의 품질보장을 위해서는 용인가능한 변이형 가운데 하나를 ‘정전화(canonization)’하여 기계학습의 판단기준을 제공해야 하는데, 기관의 표준화된 용어자원은 AI의 가장 신뢰도 높은 학습자원으로 자의적 변이를 제어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CJEU가 활용 중인 번역 관련 도구들로는 재판소 내 문서처리 관리 도구인 e-Curia, 기관 내 용어데이터베이스인 CuriaTerm, EU 기관 간 공동 용어관리도구인 IATE, 기 번역된 문장 또는 단락을 수집 및 재활용할 수 있는 EU 기관들의 중앙 번역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Euramis, CAT도구인 Trados Studio,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기관 간 신경망번역서비스(NMT)인 eTranslation 등이 있다. 번역가는 Trados Studio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번역환경에서, 각 번역 프로젝트별로 언어도구가 자동 추출하여 마련한 번역 키트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번역키트는 번역대상 텍스트, 관련 번역

메모리, 참고문헌 및 용어자료,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신경망기계번역(NMT)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Wright, 2025).

주요 도구를 살펴보면, CJEU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관 내 용어자원인 CuriaTerm(Comparative Multilingual Legal Vocabulary)은 2019~2020년 IATE에 통합되었다. CuriaTerm은 특히 CJEU 내부 사용자들이 법률용어 검색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들에게 1차 법원 다음으로 용어 신뢰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높은 신뢰성의 이유로는 CuriaTerm 구축이 번역지향 용어작업을 위한 맞춤형된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탑재된 용어들 모두가 기관 내 법률언어전문가들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쳤다는 점이 지목된다(Prieto Ramos, 2021, p. 297). 반면, 기관 간 용어자원인 IATE는 2004년 공식화된 EU 기관들의 공동 텀베이스로 2025년 1월 현재 650만 개 이상의 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IATE의 경우 기번역 용어의 변이형에 대한 신뢰도 등급<sup>32)</sup>을 표시하여 사용자의 신속한 등가어 선택을 돕고, 확장 보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용어의 정의, 출처, 실제 텍스트에서의 용례, 텀베이스 내 관련 엔트리를 제공한다. 또한 내보내기(export) 기능이 기관의 CAT 도구와 통합되어 선택한 용어를 즉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다. CJEU 사용자들의 경우 법률용어 외에 기술용어 및 EU 용어 검색에 IATE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uramis(European Advanced Multilingual Information System)는 EU 기관들이 번역한 모든 문서가 24개 언어별 문장 단위(segment)로 정렬·축적된 기관 공동 번역메모리다. CJEU의 경우 2005년부터 재판소 판례를 포함한 다언어 메모리를 Euramis에 자동 축적(feeding)해 왔다. Euramis는 문장 단위별로 기존에 번역된 동일·유사 문장을 찾아주고, 원문과 번역문을 자동 정렬하며, EU법 데이터베이스인 EUR-Lex 참조를 자동 추출해 관련 입법텍스트를 함

32) 일례로, IATE의 ‘trafficking in human beings’ 항목의 경우 변이형으로 THB, 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 trade in human beings, traffic in human beings가 제시되며, 각 변이형에 대해 신뢰도등급(예-별 4개는 “매우 신뢰할 만함”, 별 3개는 “신뢰할 만함”) 및 기관 선호 형태(이 경우는 ‘trafficking in human beings’) 또는 폐기권고 변이형(이 경우는 ‘trade in human beings’, ‘traffic in human beings’)이 제시된다(Biel & Wasilewska, 2025).

께 제공함으로써 번역가가 법령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33)</sup>. 이에 따라 번역가는 이전 번역과 정렬된 문장을 확인하면서, 보다 세밀한 문맥 기반 용어작업을 수행하고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반면, CJEU는 AI 번역(NMT)의 경우 Euramis나 IATE와 같이 반드시 적용해야 할 표준화도구가 아닌 ‘제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NMT 도구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기관 및 각국 행정기관을 위해 개발한 eTranslation과, 상용 제품인 DeepL Pro가 있다<sup>34)</sup>. 그러나 CJEU(2023)는 현재 이용가능한 신경망 기반 번역 알고리즘 가운데 어느 것도 필요한 정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NMT의 경우 아직까지는 Trados Studio 내에서 보조적 제안으로 취급되며, 법률언어 전문가가 이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및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판소에서 NMT의 주요 문제로는 1) ST 작성자의 의도적으로 계산된 애매성 (judicious ambiguity)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점, 2) 서로 다른 추상화 수준 (levels of abstraction)에 해당하는 용어들 사이에서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 3) 각국 법체계 및 EU법의 독자적 개념의 번역에는 여러 번역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4) 매번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내며 ST에서 인용된 단어, 문구, 문서의 공식번역을 TT에서 선택하거나 재현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Wright, 2025). 다만, CJEU는 eTranslation 외에도 재판소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장의 다양한 신경망번역도구를 번역에 계속 시범 활용하고 있으며, AI 번역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실무그룹(WG)을 가동중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JEU, 2023).

33) 즉, 번역 요청이 수락되면, 원문이 Euramis로 자동 전송되고, TM 검색·MT·참조 문서 패키지 생성이 백엔드에서 수행되어, 번역자는 이미 준비된 번역 키트를 받는 구조로 작업이 진행된다.

34) eTranslation의 경우 Euramis 메모리를 기반으로 훈련되었으며 EU의 24개 공용어 모두를 지원한다. 반면, DeepL은 Linguae 코퍼스를 기반으로 훈련되었으며, 크로아티아어, 아일랜드어, 몰타어와 같은 소수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eTranslation은 판결문 같은 재판소 내부 법률문서 번역에 보다 유용하며, DeepL은 회원국 법원의 예비판결요청서와 같이 비구조적이고 비형식적 문체를 가진 문서를 더 잘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Wright, 2025).

### 4.3 외주번역

CJEU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번역 수요에 구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부 전문번역가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4년 말 기준 1,489명의 계약자(프리랜서)가 전체 번역 물량의 1/3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CJEU, 2025b).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던 번역 물량의 상당수를 AI 자동번역이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IT 환경과 신규 번역도구, NMT 품질의 실험 및 검증, 피드백 제공 등으로 인해 내부 인력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다(Sirovec, 2020, p. 199).

CJEU(2025c)의 최신 외주번역 입찰명세서에 따르면, 아웃소싱을 위한 기본계약(FWC)은 언어쌍(lot) 별로 최대 50개까지 체결되며, 자연인과 법인 또는 개별 번역가 그룹 모두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분야 외주계약이 소수의 대형 언어서비스제공자(LSP)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CJEU의 경우 외주계약자의 80%가 중개업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 번역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Drugan et al., 2018, 66). 이는 재판소가 행정일원화 명목으로 LSP에 품질 관련 책임을 통째로 넘기는 대신, 프리랜서 번역가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피드백과 동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웃소싱으로 인한 부정적인 품질 관련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과 법인 소속 자연인 모두는 내부의 법률언어 전문가 자격요건에 준하여 <표 4>에 제시된 기본 전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은 모두 증명서 등으로 입증가능해야 한다. 기본계약은 1년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갱신가능하며, ‘연쇄계약 방식(in cascade)’ 방식으로 이루어져 낙찰 후에도 로트 별로 최대 계약자 수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따라서 최초의 작업배정 순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제공된 실제 번역 품질과 번역 가능 물량, 번역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발주 우선순위가 계속 변경된다. 낙찰기준은 기술 제안서상 번역 테스트의 품질 60%, 입찰가격 40%의 가중치<sup>35)</sup>를 부여하며, 품질 점수가 50

35) CJEU의 2023년 외주번역 입찰명세서(COJ-PROC-23/005)에 규정된 품질 70%, 가격 30% 가중치에 비해, 가격 가중치가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점 이상인 응찰자를 대상으로 가격 대비 품질 비율<sup>36)</sup>을 계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표 4

CJEU 외주번역 입찰명세서상 전문가 자격요건

<p>◆해당 언어국(아일랜드)에서 수여된 법학 학위(법학 학사 등)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 또는 해당국 법정변호사(barrister)나 사무변호사(solicitor) 자격 보유자, 또는 다른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해당 언어 방향의 공문서(official texts) 번역 경험자 (법학 전공 우대)</p>
<p>◆해당 언어(아일랜드어) 및 해당 언어 법률용어에 대한 완전한 습득(full mastery)</p>
<p>◆(로트 별로) 원천언어(SL)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이해</p>

계약자가 발주서에 정해진 기한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 일수 1일당 청구금액 총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계약자는 추가 대금 지급 없이 CJEU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품질수준은 내부의 추가적인 수정없이 즉각 공개(publication) 또는 기타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재판소는 인보이스 접수 후 40일 내에 일정 샘플(10%)을 대상으로 품질 검수를 실시하여, 해당 번역이 <표 1>의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 관리 대상으로 60일간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추가적인 정밀 품질평가를 통해 대금 지급/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FWC에 규정된 위와 같은 요건들이 효과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외주번역에 대한 번역브리프 제공 및 개선, 평가자 훈련, 오류 정량화, 평가도구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품질평가 체계 마련, 체계적인 피드백 제공, 개별 번역가의 역량 및 전문지식 확대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 종합적인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CJEU는 이를 위해 EU 기관들과 DGT 외주번역평가지침과 같은 외주번역 품질관리 정책을 공유하며, 아웃소싱을 기관의 프로세스 및 작업의 불가결한 일부로 관리하고 있다.

36) 입찰 X의 비율 = (해당 계약에서의 최저 입찰가격 ÷ 입찰 X의 가격) × 가격 가중치(40%) + (입찰 X의 품질 점수(100점 만점) ÷ 해당 계약에서의 최고 품질 점수) × 품질 가중치(60%)

#### 4.4 소결 및 시사점

상기에서 논의한 CJEU 품질보증 사례를 통해 향후 한국의 판결문 번역 기관이 고려할 만한 품질보증의 전제 및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기관 내 ‘품질’의 정의에 대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번역 공정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이를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판결문을 비롯한 사법문서 번역이 상당 부분 외주번역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기관은 품질의 최종 책임이 외주업체가 아닌 기관이란 사실을 명확히 하고 단순한 사후 품질평가 외에 작업공정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1) 번역 전 단계로 기관 내부의 품질 지침 및 모범 관행을 수립하고, 번역브리프와 템플릿, 참고자료와 번역메모리, 용어집을 마련하여 이를 외부 번역가와 공유하는 일, 2) 번역 단계로 외부 번역가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흐름과 내부 품질관리자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일, 3) 번역 후 단계로 납품된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권고안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번역품질 외에 원문의 품질(drafting quality)에 대한 정의와 개선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가 언어본 간 불일치의 주된 문제는 번역 품질이 아닌 원문의 품질이며, 원문의 품질 개선이 번역문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다(Prieto Ramos, 2014).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법률언어전문가가 원문의 오류, 비일관성, 불명확한 표현 등의 문제를 최종 공표 전 식별하고 수정하는 ‘공동감수(co-revision)’를 실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판례의 번역은 정본이 아닌 참고 목적의 비공식본에 불과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공동감수의 도입은 고려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 등 기관 내부 차원에서 원문 품질 개선에 대한 인식 공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AI를 통한 사건관리시스템 자동화 설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sup>37)</sup>

37) 일례로 CJEU의 경우 현재 사건관리시스템(SIGA)을 통해 인용 법령의 자동추출, 텍스트 내 하이퍼텍스트 링크 삽입, 자동 사건주제 분류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버전에서는 사건 상호 간 연계성 분석, 요약, 형식 오류 탐지 등의 역량을 추가하고, 기계가 특정 권고를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 가능성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Kozbial, 2017). 즉, 설계에 따라 원문의 다양

둘째, 기관 내, 기관 간 번역주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CJEU의 QA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부서 간, 기관 간 협력으로, 이는 CJEU 내뿐만 아니라 다른 EU 기관들의 번역문서와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U의 3대 법령 번역기관으로 불리는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중복번역을 방지하고, 용어작업 결과물 공유로 기관 간 용어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CJEU의 기관 간 협력의 핵심 사안이다. 판결문은 법령, 조약, 기존 판례와의 높은 상호텍스트성을 특징으로 하며, 신규 번역의 상당 부분이 기존 번역 문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번역 책임기관인 법제연구원, 조약번역 책임기관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결정문 번역 기관인 헌법재판소 등과의 기관 간 스타일 가이드 구축을 통해 인용 스타일을 통일하는 것은 물론, 신규 번역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번역과 용어 및 표현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 번역메모리와 용어자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번역메모리의 경우 Euramis와 유사하게, 번역 수락 즉시 이전 번역(previous translations)이 관련성과 일치율을 고려해 자동으로 MT 엔진으로 추출되고, 각 기관의 신규 번역작업은 세그먼트 별로 자동으로 공동 번역메모리로 송출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번역부서가 유효성을 인증한 용어들을 IATE 같은 공동 텀뱅크로 관리하여, 기관별로 제각기 이루어지는 용어 선택을 표준화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목적적이고 신뢰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송출되는 신규 세그먼트의 오염 방지, 데이터 규모의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설계 및 유지 등 지속적인 품질보증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완전 자동번역’으로 성급히 진행되는 대신, 관리 가능한 방식의 ‘인간번역가 결합모델(human-in-the-loop)’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CJEU를 비롯한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단순한 기계번역 후편집이 아닌, 고품질의 증강번역 결과물을 Euramis 번역메모리에 축적하고, 이는 다시 e-Translation 같은 LLM의 학습코퍼스로 사용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

---

한 오류를 AI가 자동 탐지하여 수정을 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Wright, 2025). 그러나 국내 판결문 번역기관의 경우 아직까지 AI 번역 산출물의 품질 확보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수집·처리·저장·전파 방식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부재하고, 기계학습에 사용될 기관 내, 기관 간 데이터의 정확성과 품질 확보 방안도 확실하지 않다. 기계학습을 위한 기관 내, 기관 간 번역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기관의 전문 번역가에 의해 AI에 축적하는 번역데이터에 대한 상당한 양의 증강번역이 이루어진 후에야 지배가능한 AI(governable AI)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본고는 정부의 정기적 예산 투입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 법률번역의 주요 장르로서 한국의 판결문 영어 번역의 품질보증을 위한 다양한 전제와 고려요소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의 판례 번역기관들의 품질보증 방안 수립을 위한 참고 사례로 CJEU의 번역 품질보증 절차의 핵심요소를 소개하고, 법원도서관 하급심 판결문의 일부 구성요소 AI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기관의 체계적인 품질보증 절차 도입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한국과 같은 단일 법계, 단일언어 국가의 판례 번역은 다언어 정보번역의 핵심 품질지표 달성을 위한 규범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즉, 법적 의제를 통해 언어본 간 동등한 의미를 가정하거나, 법원의 각 언어본 검토를 통한 애매성의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판결 및 절차 관련 언어의 경우 재판관의 호칭, 각 법원의 명칭, 심급이나 소송 분야별 당사자 호칭은 물론, 고정된 법적 표현(formula)이 법계 및 국가별로 각기 다르고 이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갖기 때문에 등가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사법언어의 경우 목표언어에 상응하는 법적 개념 및 사법 관련 용어가 부재하거나, 등가의 정도가 매우 낮아 기능적 등가어 외의 다른 번역전략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개별 번역가나 통제되지 않은 AI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할 경우 정확성과 일관성, 명확성은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단일언어 국가에서 제도번역으로 이루어지는 판례 번역의 품질

은 번역기준 및 스타일가이드, 템베이스와 같은 기관의 ‘제도화’와 ‘표준화’의 정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제도화와 표준화는 체계적인 번역 품질보증 접근을 통해 달성되며, 여기에는 기관 내, 기관 간 번역지침 및 스타일가이드 구축, 템뱅크 및 번역메모리의 활용과 관리, 용어전문가 및 법률언어전문가, IT 전문가 같은 직역의 확대와 외주번역가 및 타기관 번역 담당자와의 협력을 포함한 작업참여자 간 소통 채널 보장 등이 포함된다.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번역 기관들의 자동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오랜 정본번역 역사와 경험을 가진 EU 기관들은 작업공정의 자동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되, 이를 번역 대상 텍스트의 종류 특수적 작업방식을 왜곡하는 정도까지 밀고 가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한다. CJEU의 2023년 ‘인공지능전략 보고서’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높은 재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아키텍처 접근에 따른 ‘지배 가능한 AI’ 도입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판결문 번역기관들이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품질보증 접근을 건너뛰고 완전 자동화로 성급히 옮겨갈 경우, NMT가 생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오류와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번역 제안의 판단 및 수정,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 검증, 인용 번역의 정확성 확인 등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본고의 법원도서관 하급심 판결 AI 번역 사례 분석은 통제되지 않은 AI 번역이 이야기하는 문제의 단면에 관한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AI의 발전으로 인간은 번역과 같은 ‘반복 작업’ 대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고품질 법률번역 생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번역가, 법률가나 법률언어전문가가 NMT의 품질을 성공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Wright, 2025). 따라서 CJEU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번역품질 보증의 핵심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번역메모리 등 각종 번역도구를 통한 자동화된 번역키트 제공, 용어추출의 자동화, 자동 세그먼트 단위 정렬과 메모리 추적, NMT의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 작업 등은 기관의 작업공정 관련 품질보증의 핵심 내용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법원도서관. (n.d.-a). 영문판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대법원 법원도서관. ht  
[tps://library.scourt.go.kr/search/judg/case/eng#ajaxsearch](https://library.scourt.go.kr/search/judg/case/eng#ajaxsearch)

### <2차 자료>

- 대법원. (1998).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 (재판예규 제625-1호).  
법률신문. (2025년 4월 9일). 법원도서관, 상용 AI 실무에 활용.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01>
- 법원도서관. (n.d.-b). Guide. 대법원 법원도서관. <https://library.scourt.go.kr/eng/SCD/guide>
- 법제처. (2026).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html>
- 사법연수원. (2023). 민사판결서 작성론(주문편). 사법발전재단.  
사법연수원. (2024). 민사판결서 작성론(이유편). 사법발전재단.  
오규성. (2017).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오세혁. (2009). 판결서의 구조와 양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6(3), 631-675.
- 유정주. (2019). 정본번역의 용어일관성 사례연구 — 투자보장협정의 법인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4), 169-201.
- 유정주. (2020). 법률번역에서 등가의 의미와 비교법적 분석사례 — ‘특수관  
계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63-95.
- 유정주. (2025). Plain Language 법제의 개념, 접근법, 발전 방향 — ISO  
24495-2 및 유럽의회의 ‘시민의 언어’ 도입의 시사점. 법제, 710,  
281-318.
- 정승연. (2024). 법조 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 Bhatia, V. K. (1993). *Analys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gman.

- Biel, Ł. (2023). Variation of legal terms in monolingual and multilingual contexts: Types, distribution, attitudes and causes. In Ł. Biel & H. J. Kockaert (Eds.), *Handbook of terminology: Vol. 3. Legal terminology* (pp. 90-123).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iel, Ł., & Wasilewska, K. (2025). Terminology and terminography in specialized communication. In J. Engberg, T. Roelcke, & R. Breeze (Eds.), *Specialized communication: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 1, pp. 385-405). De Gruyter Mouton.
- Brannan, J. (2021). Conveying the right message: Principles and problems of multilingual communication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S. Goźdz-Roszkowski & G. Pontrandolfo (Eds.), *Law, language and the courtroom: Legal linguistics and the discourse of judges* (pp. 217-230). Routledge.
- Cao, D. (2007). *Translating law*. Multilingual Matters.
-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 Yale Law Journal. (2020).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22nd ed.). The Bluebook, Inc. <https://www.legalbluebook.com/bluebook/v21/tables/t2-foreign-jurisdictions>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1950). 213 U.N.T.S. 221.
- Council of Europe. (1950).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ttps://curia.europa.eu/site/upload/docs/application/pdf/2023-11/cjeu\\_ai\\_strategy.pdf](https://curia.europa.eu/site/upload/docs/application/pdf/2023-11/cjeu_ai_strategy.pdf)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5a). *Annual report 2024: The year in review*. [https://curia.europa.eu/site/jcms/d2\\_5140/en/](https://curia.europa.eu/site/jcms/d2_5140/en/)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5b). *Annual report 2024: Management report*. [https://curia.europa.eu/site/jcms/d2\\_5140/en/](https://curia.europa.eu/site/jcms/d2_5140/en/)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5c). *Tender specifications: Procurement procedure COJ-PROC-25/025*.  
[https://curia.europa.eu/site/jcms/d2\\_5153/en/](https://curia.europa.eu/site/jcms/d2_5153/en/)
- Drugan, J., Strandvik, I., & Vuorinen, E. (2018). Translation quality, quality management and agency: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In J. Moorkens, S. Castilho, F. Gaspari & S. Doherty (E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From principles to practice* (pp. 39-68).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European Union. (1992).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 Directive 2010/6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on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Directive 2010/64/EU]. (20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80*, 1-7.
-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FRAP]. (2023). United States Courts.  
<https://www.uscourts.gov/rules-policies/current-rules-practice-procedure/federal-rules-appellate-procedure>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2018). United States Courts.  
<https://www.uscourts.gov/forms-rules/records-rules-committees/superseded-rules/federal-rules-civil-procedure-2018>
- Herráez, J. M. O., Day, C. G., & Hertog, E. (2013). Translating for domestic courts in multicultural regions: Issues and new developmen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 Borja Albi & F. Prieto Ramos (Eds.), *Legal translation in context: Professional issues and prospects* (pp. 89-121). Peter Lang.
- Highsmith v. Highsmith, 587 S.W.3d 771 (Tex. 2019).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20). ISO 20771:2020 *legal translation—Requirements*. <https://www.iso.org/standard/69032.html>
- Koźbiał, D. (2017). Two-tiered approach to quality assurance in legal translation 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pp.

- 155-174). Language Science Press.
- Koźbiał, D. (2020). *The language of EU and Polish judges: Investigating textual fit through corpus methods*. Peter Lang.
- Obergefell v. Hodges, 576 U.S. 644 (2015).
- Prieto Ramos, F. (2014). International and supranational law in translation: From multilingual lawmaking to adjudication. *The Translator*, 20(3), 313-331.
- Prieto Ramos, F. (2021). The use of resources for legal terminological decision-making: Patterns and profile variations among institutional translators. *Perspectives*, 29(2), 278-310.
- Prosecutor v. Nikolić, IT-94-2-A, Judgment on sentencing appeal (ICTY, Mar. 8, 2006).
- Sager, J. C. (1997). Text types and translation. In A. Trosborg (Ed.),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pp. 25-4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Šarčević, S.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 Šarčević, S. (2012). Challenges to the legal translator. In P. M. Tiersma & L. M. Sol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pp. 187-199). Oxford University Press.
- Schilling, T. (2010). Beyond multilingualism: On different approaches to the handling of diverging language versions of a community law. *European Law Journal*, 16(1), 47-66.
- Sirovec, S. (2020). Achieving quality in outsourcing. *Babel*, 66(2), 193-207.
- State v. Grayson, 154 Wn.2d 333, 111 P.3d 1183 (Wash. 2005).
- Stefaniak, K. (2017). Terminology work in the European Commission: Ensuring high-quality translation in a multilingual environment.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pp. 109-121). Language Science Press.
- Tomić, A., & Montoliu, A. B. (2013). Translation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 Court. In A. Borja Albi & F. Prieto Ramos (Eds.), *Legal translation in context: Professional issues and prospects* (pp. 221-242). Peter Lang.
- United Nations.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 Van Der Jeught, S. (2019). Translati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H. Ruiz Fabri (Ed.), *Max Planck Institut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rocedural law* (pp. 1-17). Ox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S. (2025). Artificial intelligence in legal translation 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Law*, 14, 120-142.

## **Quality assurance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court decisions: Insights fr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eong-Ju Yoo**

Public Interest Law Center, Handong Global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o ensure the quality of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ourt decisions within Korea's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system. Although these translations have no authentic legal force in a monolingual jurisdiction, they constitute a major, regularly funded public project and present particular challenges. Translating court decisions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is among the most demanding forms of legal translation, mak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quality assurance framework essential. Yet institutions such as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lack explicit quality safeguards, raising the risk that low-quality AI output will enter public databases and, if reused as training data, entrench long-term quality defects. Against this backdrop, the article synthesizes key premises, quality indicators, and constraints for judgment translation discussed in Western legal translation scholarship and uses this framework to critically examine quality issues in current Korean practic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I-generated translations of lower court judgments produced since January 2025. It then introduce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the world's largest institutional provider of judicial decision translation—as a reference model. Drawing on CJEU annual reports, its AI strategy, tender specifications, and framework contracts, the study describes its internal translation and revision procedures, management of outsourced work, and use of terminological resources, translation memories, and AI tools. On this basis, the article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institutional translation workflows in Korea, including coordinated development of style guides, termbases, and translation memories, alongside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quality management for outsourced legal translation.

**Keywords:**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al translation; translation of court decisions; AI translation; quality assurance

**키워드:** 법률번역, 제도번역, 판결문번역, AI번역, 품질보증

유정주(<https://orcid.org/009-0008-8664-5032>)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 위촉연구원

jeongjuy@naver.com

논문 투고일: 2026년 5월 10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5월 3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6월 14일